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도시점 2024. 7. 12.(금) 조간 배포 2024. 7. 11.(목) 9:00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4.4.3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4.7.10일 승인)을 승인
-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개정·시행(’21.6.30.)한 이후로, 세 번째로 작성된 ’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선정(’23.7.5.)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

## [참고]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자체정상화계획 (Recovery plan)		부실정리계획 (Resolution plan)		
① 작성목적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② 작성주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		예금보험공사		
③ 평가승인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④ 위기대응	평시	자체정상화계획	적기시정조치		정리계획
	-	금융기관 자구책 실행 (발동요건 하회시) · 자본 확충 · 유동성 조달 등	경영개선권고 (BIS<8% 등) · 배당 제한 · 증자 등	경영개선요구 (BIS<6% 등) · 조직 축소 · 임원 교체 등	경영개선명령 (BIS<2% 등) · 주식일부소각 · 제3자인수 등

'23.7.5.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사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3.10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4.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4.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 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 (자체정상화계획 개념·의의)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
  -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
- (주요내용) ①지배구조, ②핵심기능·사업, ③발동지표·요건, ④위기상황분석, ⑤자체 정상화수단, ⑥상호연계성 분석, ⑦대내외 의사소통으로 구성 <참고2>
  -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③발동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⑤자체정상화수단" 이행)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 (Fire-drill)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0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매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 결과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에 반영

한편 예보는 '23.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4.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24.7.10일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 부실정리계획 작성 · 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 (부실정리계획 개념 · 의의)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 평시에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①전략적 사업분석, ②정리전략, ③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④금융계약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⑤정리가능성 평가로 구성 <참고3>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과 함께 정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위기 시 예금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대체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하여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7.10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계획이다.

※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주홍민 (02-2100-2910)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2-2100-2904)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책임자	국 장	김형순 (02-3145-7050)
		담당자	팀 장	김현정 (02-3145-7090)
	예금보험공사 SIFI정리부	책임자	부 장	박광록 (02-758-0541)
		담당자	팀 장	장태욱 (02-758-0542)
			팀 장	박성진 (02-758-0591)
			팀 장	홍성찬 (02-758-0537)
팀 장	정민호 (02-758-0533)			

-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감원의 평가 (「금산법」 제9조의3~4, 영 제5조의5)
  -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 ③ 예보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금산법」 제9조의5)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 ④ 금융위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심의 및 승인 (「금산법」 제9조의6~7, 영 제5조의6)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위가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승인) 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
    - ※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 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금산법」 제9조의8~9)
  -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의 해소를 요구
  -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자체정상화계획은 총 7개 부문으로 구성·작성됨

-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아 위기시 우선적으로 유지해야할 핵심기능·핵심 사업을 D-SIFI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위기인식 → 보고·의사결정 → 자체정상화수단 집행 등 위기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
- 이 때,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발동지표·발동요건을 설정하고 동 계획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행이 가능하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

- 1 **(지배구조)**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효성 있는 작성, 관리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임직원 등의 책임·권한 및 업무절차 등 마련
  - 자체정상화계획을 수립·갱신·실행하는 총괄 조직으로 자체정상화계획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사회를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지정
- 2 **(핵심기능·사업)** D-SIFI가 제3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주요 기능 및 사업 중 위기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핵심기능(예: 지급결제 등)과 자체 경영 정상화에 중요한 핵심사업(예: 개인금융 등)을 선정
- 3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 조기인식 및 위기대응에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지표(발동지표)를 선정하고, 최저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임계치(발동요건)를 설정
- 4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를 종류별(고유위험, 시장위험, 결합위험 등)로 마련하고, 동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보완
- 5 **(자체정상화수단)** 위기상황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체정상화수단을 선정하고 집행에 따른 발동지표의 개선효과와 장애요인을 분석
- 6 **(상호연계성 분석)** 그룹내 또는 외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서 파생되는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위기 전이 가능성을 파악하고 중요 자회사를 선정
- 7 **(대내외 의사소통)** 위기시 감독당국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및 실행을 지원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

◆ 부실정리계획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작성됨

-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아 D-SIFI 정리 시 우선적으로 유지해야할 기능·사업을 예보가 선정하고, 금융안정 및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리전략을 수립
- 정리전략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조달방안 마련 및 체계적 의사결정 체계 등을 수립하고, 부실정리계획 수립과정에서 파악한 정리장애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

- ① **(전략적 사업분석)**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직·재무·상호연관성 등 고유특성과 중요자회사, 핵심기능·사업·공유서비스 등을 분석하여 정리 전략에 반영
- ② **(정리전략)**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현행 법령상 실행 가능한 정리전략 등을 검토하고, 사업재조정 등을 통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추진
- ③ **(자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원조달방안을 검토하고,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 유지방안을 마련
- ④ **(금융계약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질서정연한 정리를 위해 D-SIFI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과 역할을 정비하고, 차질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금융시장 및 예금자 불안 차단 추진
- ⑤ **(정리가능성 평가)** 정리전략 추진 시 질서정연한 정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